

2026 유소년 스포츠 기반구축사업

강사·심판·운영요원 운영 편람

본 편람은 「2026년 유소년스포츠기반구축 사업 지침」(대한체육회, 이하 "지침"), 「사업 편람」(대한체육회), 승인 사업계획서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사·심판·운영요원의 활동 기준을 정한다.

제1조 (활동 구분 및 수당)

① 강사 및 요원의 활동 구분과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구분	활동	수당(원천징수 전)
학교체육 강습 강사	학급·학교스포츠클럽 단위 강습 (학교당 24회차)	50,000원 / 시간(회차)
방과후·늘봄 강사	방과후학교(돌봄교실)·늘봄 프로그램 (학교당 24회차)	50,000원 / 시간(회차)
대회 심판	권역별 대회 심판	1일 최대 70,000원 (4시간 이내 40,000원)
대회 운영요원	기록·진행·안전관리	1일 최대 70,000원 (4시간 이내 40,000원)

② 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, 월 합산 지급액 125,000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 8.8%)를 원천징수한다.

[근거] 지침 2쪽(수당 지급 공통 사항), 3쪽(강사 자격 요건 및 수당 지급 기준, 운영요원 선발 및 운영)

제2조 (자격 요건)

-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. 1.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지도사 (전문·생활·유소년) 2.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발급 지도자 자격증
- ② 심판은 연맹 발급 심판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- ③ 아동학대·성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위촉 전 결격사유 없음 확인(전자동의) 및 배정 학교의 외부강사 경력조회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.

[근거] 지침 3쪽(강사 자격 요건)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

제3조 (겸직 등 신분상 제한)

- ① 현직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은 후 활동하며, 정규 수업시간 외(0교시·방과후·늘봄·학교스포츠클럽·방학 중)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. 정규 수업시간 내 본인 담당 수업의 지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체육회 등 공공기관 소속자(무기계약직 포함)는 소속기관의 취업규칙 등 겸직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를 본인 책임하에 득한 후 지원·활동하여야 한다.

③ 겸직 제한이 없는 자(전업 지도자 등)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[근거] 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·제26조, 소속기관별 취업규칙

제4조 (위촉 절차)

① 위촉은 연맹 홈페이지(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.com)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. 1. 리더 회원 가입 및 사무국 승인 2. [신청마당]에서 활동 분야 지원 3. 배정(선착순 지명 또는 권역별 배정, 본인 소속교는 신청 시 본인지도 지정 가능) 4. 마이페이지에서 위촉 전자동의 및 위촉계약 전자동의 5. 자격·경력 확인 완료 후 활동 개시

② 위촉계약서는 배정 확정 시 홈페이지에서 자동 생성되며, 전자 동의로 서면 서명을 갈음한다.

③ 연맹은 위촉 전 강사 대상 워크숍(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, 인권 교육)을 실시하며, 강사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

[근거] 지침 2쪽(단체별 자체 강사 자격 요건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·선발), 3쪽(선발 강사 대상 워크숍 개최)

제5조 (강습 운영)

① 강습 내용은 연맹이 발간한 「2026 모두가 성장하는 유소년 플라잉디스크 프로그램 교재」 및 승인 사업계획서의 24회차 표준 커리큘럼(하이브리드 5종목: 양궁·컬링·테니스·피구·추월 레이스)에 따르되, 학교 여건·학년·시설에 맞게 강사가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교재는 홈페이지 [알림마당→자료실→교육 자료]에서 내려받는다. (파일명: 2026_유소년플라잉디스크_프로그램교재.pdf)

③ 강습은 학교당 총 24회차(회차당 1시간)를 기준으로 하며, 주당 운영 횟수의 제한은 없다. 방학 중 집중 운영 시 일정표를 사무국에 공유한다.

④ 유형 구분은 대상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. 학급·학교스포츠클럽 단위 강습은 학교체육(유형③), 방과후학교 (돌봄교실)·늘봄 프로그램은 방과후·늘봄(유형⑤)으로 하며, 운영 시간대에 의하여 구분하지 아니한다.

⑤ 매 회차 종료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회차 보고(운영일지)를 제출한다. 회차 보고는 수당 산정 및 정산 증빙의 기준이 된다.

[근거] 지침 1쪽(유형③·⑤ 정의), 승인 사업계획서(24차시 표준 커리큘럼), 사업 편람 50~51쪽(강습 보급·참여 학생 목표 달성도)

제6조 (수업 사진 및 개인정보)

① 회차 보고에 첨부하는 수업 사진은 학생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뒷모습·원거리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, 식별 가능한 사진은 학교의 사진 활용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.

② 수당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는 홈페이지에 입력하지 아니하며, 위촉 확정 후 사무국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.

[근거] 개인정보 보호법, 연맹 개인정보처리방침

제7조 (수당의 지급)

- ① 강습 수당은 제출·확인된 회차 보고를 기준으로 월별 정산하여 지급한다. 회차 보고가 제출되지 아니한 회차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교통비 등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대회 수당은 대회 종료 후 지급하며, 「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」를 작성·보관한다.

[근거] 지침 2쪽(수당 지급 공통 사항 —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작성·보관),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

제8조 (활동 실적 관리)

- ① 활동 실적은 리더 포인트로 관리한다. 강습 회차당 10점, 심판 1일 20점, 행사 운영 1일 15점, 자율연수 이수 50점으로 하며, 누적 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(어쏘·필드·치프·엘리트·마스터)을 부여한다.
- ② 등급별 활동비 등 지원은 2027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이며, 배정·위촉 우선권은 시행 중이다.

제9조 (해촉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아동학대·성범죄 등 결격사유 확인 2. 정당한 사유 없는 강습 불이행 3. 허위 보고 또는 수당 부정 수령 4. 기타 사업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
- ② 중도 해촉 시 기 수행한 회차의 수당은 지급한다.

제10조 (문의)

사무국 031-984-3248 · kfdf60@hanmail.net ·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.com

부칙 — 본 편람은 2026. 7.부터 적용하며, 지침·계획 변경 시 개정할 수 있다.